

## 효성첨단소재(주) 생활임금 방침

효성첨단소재(주)는 모든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임직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임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효성첨단소재(주)는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해 성별, 종교, 출신국가 및 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또는 인종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한 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효성첨단소재(주)의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효성첨단소재(주)와 종속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 됩니다.
3. 효성첨단소재(주)의 생활임금 정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효성첨단소재(주)는 모든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임직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모든 임직원의 급여를 각 국가별 생활임금과 비교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효성첨단소재(주)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